

## 石油価格 政策의 變遷

鄭 萬 源

〈動力資源部 油政課 · 行政事務官〉

### I. 石油価格 政策의 目標

筆者가 石油価格 調整業務를 담당한 지도 어느 새 3年 餘가 된다. 価格調整이라는 것이 単純한 原価計算作業에서 끝나지 않고 일관된 흐름을 갖기 위하여는 그追求하는 目標가 明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当該年度 精油社에의 適正損益 水準 維持를 形式的인 目標로 하고 있으나, 實質的인 目標는 油種別 需給安定, 需要管理와 長期의 価格安定의 基盤構築에 놓여져야 한다.

1964年 以来 政府가 直接 統制하여 오고 있는 石油価格은 상당한 障痛과 產苦를 거치며, 우리 나라 石油政策의 變遷을 한 몸에 담아 오고 있다. 더구나 1979年 7月 10日에 石油事業基金制度가 施行되고 原油를 비싸게 사오든 싸게 사오든 損益差異가 發生하지 않도록 原油価格 平準化制度가 実施되면서 일반常識으로 쉽게理解할 수 없다는 理由만으로 해서 価格는 몸살을 앓게 된다.

精油社의 売出額이 幾何級數의 으로 불어나면서 許容誤差에 의한 損益差異 또한 같은 比率로 늘어나서 精油業의 損益은 이제 価格 1% 算出差異에 따라 年間 약 6百億원의 差異가 發生하고 있다.

政府가 価格을 直接 統制한다는 理由 하나만으로一般的으로 認定되는 會計原則上 費用으로 認定되는 費用을 価格에 담는 것 까지도 論難의 対象이 되고 있으며, 精油業의 収益確保 対象이 価格만인 것으로 해서 政策原油配分, 韓電소요 B-C油 輸入許容 등 石油政策을 수행하면서 派生되는 하나 하나의 일마다 価格가 감초처럼 끼여 든다.

그러다 보면, 그 涼中에서 때로 本流를 잃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 잡히기도 하나, 위낙 보는 눈이 많은 石油価格算定이고 보면, 重要的 것은 그러한 損益誤差나, 감초처럼 끼여드는 일의 絶對量이 아닌, 무엇을 向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反省이다. 石油化学工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프타를 低価로 維持하다 보니 B-C油가 비싸질 수 밖에 없고, 나프타의 低価維持에 따라 石油化学工業은 稼動率이 늘어나 나프타를 더 필요로 하는反面, 精油社는 나프타를 많이 팔면 팔수록 損害가 나니까 原油導入에서부터 가능한限(물론 그 選択범위는 그리 크지 않지만)나프타가 적게 生産될 수 있는 油種을 選択하고 막대한 損失을 堪耐하면서까지 나프타를 輸入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결국 石油化学工業이 直接 나프타를 輸入하여 나프타의 低価維持에 따른 혜택을 일부 잠식하는 問題, 이 문제는 비단 이러한 나프타需給만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工業이 直接 나프타를 輸入하여 나프타의 低価維持에 따른 혜택을 일부 잠식하는 問題, 이 문제는 비단 이러한 나프타需給만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 복잡한 石油価格問題

호르무즈海峡의 취약성 및 中東政情不安 등을 감안할 경우, 石油의 需給安定을 위하여는 政府備蓄外에 原油導入窓口를 多元化해야 한다는 것이 石油政策의 하나의 큰 骨格이나 導入先多元化 対象地域의 原油가 나프타生産이 많을 수 밖에 없는 油種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國際나프타価格은 다른 油

種에 비해 高價이므로 그 만큼 原油価도 비싼反面 同原油를 導入·精製·판매 할 경우 販賣收益이 좋 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販賣收益이 더 낮아지는 問題(물론 이는 나프타価格 외에 灯·輕油価格도 상 당水準 기여 한다.) 마저 發生되어 결국 導入先 多邊化 장려금을 주지 않는限(이도 충분하지 않고) 導入先多邊化를 기피하는 問題, 脱石油政策 推進으로 数年내에 B-C油는 남고, 軽油는 모자랄 것은 누구나 認定하고 걱정을 하나 B-C油를 투입, 나프타, 灯·輕油를 生産하는 重質油 分解池設을 建設할 경우 精製施設建設所要資金의 2배에 達하는 막 대한 資金이 所要되나 B-C油보다 나프타는 더 싸고, 灯·輕油도 그리 많은 価格差異가 나지 않으므로 해서 重質油分解施設建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問題라고 할 수 있다.

石油価格政策은 理想論만으로는 안된다. 石油化學工業의 自體 競爭力은 타이어·섬유등 最終製品 生產者의 生產性向上, 品質改善등 차체 競爭力 強化에 따라 強化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確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 이러한 問題가 생기는가? 輸出의 40%以上 을 차지하는 合成섬유, 合成수지, 合成고무의 原料인 石油化學工業製品의 뎅핑 輸入을 방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방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무엇이 根源의 問題인가? 最終製品의 生產性向上, 品質 고級化가 問題다.

이 問題는 單純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한다. 現實의 제약을 모두 감내하면서 이러한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짜내자. 石油価格은 이렇게해서 陣痛을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 II. 石油價格 政策의 變遷

### 1. 石油價格 算定

#### 가. 精油會社의 損益을 考慮한 価格調整

基本的으로 価格이란 어떤 財貨나 用役에 对한 需要와 供給에 따라決定되며, 이러한 過程에서 価格은 需給을決定하면서 同時に 需給狀況은 그때 그 때의 価格을決定하는 過程을 반복하면서 均衡狀態를維持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人為의으로 価格

을 統制하지 않는 한, 需給의 問題는 価格과 同時決定되고 아무런 問題가 發生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事情에 의해서 価格이 人為의으로 統制된다면, 需給의 均衡與否가 곧바로 問題되며, 特히 石油와 같은 重要物資의 需給問題는 國民經濟 全般에 걸쳐 重大한 意味를 가지는 것이므로, 石油에 对한 価格을 政府가 人為의로決定한다면, 이러한 需給安定問題가 가장 優先의으로 考慮되어야 하는 것이 当然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価格이야 말로 需給을決定하는 가장 重要한 要素이기 때문이다.

石油는 우리 生活에 本格的으로 利用되기始作한以來 그 重要性으로 말미암아 그 価格決定에 있어 政府의 統制를 받아 왔다. 特히 石油가 本格的으로 國民經濟에서의 主導의인 에너지役割을担当하였던 1970年代 以後 政府는 石油의 需給 및 価格에 걸쳐 廣範圍한 統制를 加해 왔으며, 이에 따라 石油에 对한 価格決定問題는 石油產業 全般에 걸친 가장 重要한 業務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政府가 石油에 関한 価格을決定할 때 그 基準이 되는 것은 石油를 生產 供給하는 精油會社의 損益이었다. 왜냐하면 損益이야말로 物量需給을決定하는 가장 重要한 要素이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精油會社의 立場으로 価格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原油를 導入해서 精製한 後 이를 販売하면 할 수록 損失이 發生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損失을 最少化하기 위하여는 稼動率을 적정 수준으로縮少調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事態는 国家의으로 보면, 結局 油類의 供給不足事態를 意味하는 것이므로 政府는 精油會社의 稼動에 따른 損失을 보전하는 水準으로 石油價格을 引上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政府가 油價를決定할 때에는 항상 需給問題를 염두에 두고 精油會社의 損益을 分析하여 精油會社의 適定稼動水準을 維持함과 同時に 精油會社에 不當한 利益이 發生하지 않도록 하여 왔다는 점에서 現在까지의 油價調整 作業은 精油會社의 損益分析作業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同時に 이러한 損益分析은 精油會社가 原油를 導入, 精製, 販売하는 過程인 精油部門뿐만 아니라 精油會社가 經營하는 다른 部門의 損益, 即潤滑油, 石油化學, 發電部門의 損益까지도 考慮되었음을勿論이다.

## 나. 油價決定時의 基準 精油会社

이와 같이 政府가 油價를 決定할 때에 精油会社의 損益을 檢討하여야 한다면, 어느 精油会社를 基準으로 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問題가 發生한다. 哪나하면 가령 A, B, C라는 3個의 精油会社가 있어 이들의 費用構造를 比較해 볼 때, A社가 가장 우수하고 B社는 그 다음, C社가 가장 나쁜 費用構造를 가지고 있다고 假定할 때, A社를 基準으로 하여 油價를 決定한다면, B, C社는 相對적으로 缺損이 커져서 生產을 기피할 우려가 있고, 反面 C社를 基準으로 한다면, A, B社는 過多利益이 發生하게 되어 消費者에게 不必要한 負担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같은 精油会社라고 하더라도 經營하는 分野에 따라 가령 精油部門의 費用構造는 좋은데 精油部門外의 費用構造는 나쁘다던가 하는 問題도 發生하게 되므로 特定精油会社를 基準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精油部門만을 基準으로 할 것이냐, 또는 全部門의 損益을 考慮할 것인가도 決定해 나가지 않으면 않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国内 精油会社의 費用構造를 살펴보면, 〈表-1〉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80年까지 国内에서 가장 큰 精油能力을 保有하였던 大韓石油公社를 基準으로 할 때, 精油部門만을 比較해 보면, 湖南精油는 当時の 施設能力을 감안하면 油公에 比해多少有利한 反面, 京仁에 너지는 相對的으로不利한 狀況이었다. 한편 精油部門을 除外한 다른 部門을 比較해 보면, 京仁에 너지가 施設能力에 比해 가장有利한 反面湖南精油는 가장不利한 様相을 보이고 있었다.勿論 이와 같은 費用構造의 差異는 항상 變化될 수 있는 것이지만, 第2次石油

〈表-1〉 国内精油会社의 部門別 損益(税前基準:78年度)  
(단위:百万원)

	油公	湖南	京仁	비고
施設能力	28만 B/D	23만 B/D	6만 B/D	
部門別 損益				
精油部門	14,331	8,257	1,736	
石油化學部門	9,596	-	-	
유통유무部門	4,090	3,250	-	
發電部門	-	-	5,328	
計	28,017 (18,229)	11,507 (6,019)	7,064 (3,751)	

(註) ( )내는 稅後 損益임.

波動이 發生함으로써 原油價가 多元化되기 前까지는 国内精油会社間에 이러한 費用構造 差異는 계속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78년까지는 油公의 損益을 基準으로 하여 油價를 決定하되 其他精油会社의 損益을 參考하는 方向에서 價格을 決定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78年末의 이란事態로부터 비롯된 第2次石油波動의 結果 原油價가 多元化되기 始作하자 国内油價를 決定하는 原價要素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原油價에서의 격차 發生으로 政府는 종전 方式에 의한 油價調整方式으로는 더 이상 各 精油会社間의 損益均衡을 維持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国内油類需要 增加에 對備한 各 精油会社의 施設擴張으로 油種別 販売構造가 變化됨으로써 從前까지의 社別損益構造가 달라지게 되어서 從前方式을 따르기 어려운 狀況이었다. 따라서 政府는 原油價에서의 差異를 縮少하기 위하여 原油價平準化制度를 實施함과 同時に 石油安定基金에 의한 精油会社의 損益統制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80年 2月 27日부터 換率에 있어서의 變動制를 實施함으로써 油價에 換率變動을 事前 予測하여 反映하기 어려운 점도 精油会社 損益의 事後統制를 不可避하게 만든 커다란 理由가 되었다.

## 油價自律化的 기록

이렇게 됨으로써 從前과 같이, 油公의 損益을 基準으로 한 油價調整은 더 이상 持續할 수가 없는 狀況이었으므로 政府는 80年 11月 19日 油價調整時부터 從前까지의 油公基準에서 기준 精油会社를 확대, 結局 81年 4月 19日 油價調整 時에는 国内全体 精油会社의 損益을 基準하도록 制度를 變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基準會社의 變更은 各 精油会社間의 競争誘導라는 側面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判断되었으며, 더구나 政府가 指向하는 民間主導型 經濟運用方式과도 一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층 더 意味가 賦與되는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觀點에서 政府가 各 精油会社의 缺損을 石油安定基金으로 补填해 주던 制度는 国内全体 精油会社의 損益을 基準으로 함으로써 各 精油会社間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方針과는正面으로 相馳되었기 때문에 結局 废止되고 말았다. 따라서, 일단 精油会社 全体를 基準으로 油價를 決定하게 되면, 各

精油会社는 그 범위 내에서 各社間의 경쟁을 通해 最大의 利益을 얻을 수 있도록 努力하게 되었으며, 이 過程에서 缺損이 發生한 精油会社에 대해서도 政府가 損失補填을 해주지 않게 됨으로써 各 精油会社는 自己의 責任하에 經營을 하게 되고, 그 結果에 대해서도 自社가 責任을 지게 되어 名實共의 油価自律화의 기틀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 다. 油価決定時 精油会社에의 許容利益水準

上述한 바와 같이, 特定한 精油会社를 基準으로 하건 또는 国内精油会社 全体를 基準으로 하건간에 어느 程度의 利益을 許容하여야 할 것인가는 오랫동안 政府關係部處間に 論難이 거듭되어 왔다.

예를 들어 国民의 負担緩減을 위하여 精油会社가多少 損害를 보더라도 낮은 価格을 維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反対로 需給의 安定을 為하여는 精油会社의 利益이 크면 有利할 좋은 것이다. 우리 나라는 에너지消費에 있어서 石油의 依存度가 를 뿐만 아니라, 価格에 따른 需要의 彈力度가 낮기 때문에 一段 価格이 決定되면 그 価格水準이 높거나 낮거나 간에 크게 関聯없이 消費가 이루어진다는 点에서 価格決定時 精油会社의 損益許容範囲를 決定하는 問題는 많은 사람의 觀心을 끌어왔다.

그러나 国内の 與件上 精油会社에 過多利益을 許容하는 것은 考慮될 수 없었으며, 또 한편 需給의 安定을 위해 油公의 損益許容範囲는 比較的 제한된範囲내에서 決定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基準이 되었던 것이 政府가 価格을 決定해 주는 独寡点品目에 있어서의 許容利益水準인 「税后自己資本의 15% 利益概念」이었다. 即 精油会社도 民間이 經營하는 会社일 뿐만 아니라 80年 以前에는 大部分 外国人이 投資한 会社였기 때문에 外国人投資環境의 保護라는 觀點에서도 最少限 15% 以內의 利益은 許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原則에 따라 1979년까지는 油公의 税后自己資本 15%의 利益을 許容하는 水準에서 価格을 決定하였던 것이다.勿論 이러한 利益은 油公全体로서의 利益을 意味한 것이며, 따라서 實際로 価格를 調整할 때에는 먼저 油公의 石油化学 및 潤滑油部門의 損益을 推定한 後 15%의 利益을 許容하기 위한 精油部門의 利益水準을 決定한 것이다.

그러나 油公의 石油化学 및 潤滑油部門의 利益이 커짐에 따라 上記와 같이 税后自己資本의 15% 利益만을 許容하기 위하여는 精油部門에서 缺損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게 되어 油類需給上の 問題를 우려하는 경우가 發生하게 되었으므로 다음으로導入된 概念이 他部門의 損益에 相關없이 精油部門의 損益水準이 零이 되도록 하는 概念이었다. 即 油類需給安定을 위해 最小限 缺損을 내게 해서는 안되지만, 利益도 許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政府의 事前予測의 損益決定은 80年 2月 27日부터 始作된 變動換率制 実施와 繼続의 原油価上昇等의 原因에 依하여 根本적으로 무너지고 80年度 仮決算結果 国内精油会社는 全体의 으로 約 2千億원의 缺損을 示顯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政府는 石油安定基金으로 上記 缺損의 15% 정도의 利益을 許容하도록 決定하였다. 이상과 같이, 油価決定에 있어서의 許容利益水準이 變化된過程은 〈表-2〉와 같다.

〈表-2〉 油価決定時 精油会社의 損益基準

調整日字	78.1.28	'79		'80			81.4.19 以 後
		3.7	7.10	1.29	8.24	11.19	
基準会社	油 公					精油 3 社	精油 5 社 精油部 門15%
許容利益 水準	自己資 本15%			精油 部門			

## 2. 油価管理 方式의 變遷

### 가. 原油価 單一化 時의 油価管理方式

原油価가 單一化되어 있었던 1978年 까지는 上述한 바와 같이, 原油의 質에 따른 合理의 価格이 設定되어 있었기 때문에 各 精油会社에 있어서의 原油構造가 비슷한 樣相을 보였었으며, 따라서 当時 油価算定의 基準 精油会社였던 油公의 費用要素만을 分析함으로써 国内油価를 決定할 수가 있었다. 即 油公의 原油投入費와 油公의 精製費 等을 檢討함으로써 油公의 原油要素를 決定하였으며, 同時に 油公의 販賣収益을 檢討함으로써 製品販賣 等에 따른 収益등을 決定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分析된 油公의 収益과 費用을 对比 시킴으로써 油公의 損益水準을 推定하고 이에 따라 油価의 引上率을 決定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引上率은 油公을 除外한 其他精油会社에도 同一하게 適用하여도 其他精油会社의 費用構造가 油公과 비슷한 構造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無理한 점이 없었다.

#### 나. 原油価 多元化 事態에 따른 油価 管理方式

그러나 79年에 들어서 第2次石油波動에 따른 原油価 上昇이 本格화되면서 原油価格의 多元化 現象이 一般化되어 従前과 같이, 油公의 原油費와 油公의 精製費만을 分析함으로써 油価를 決定하는 것은 不可能하게 되었다. 이는 各 精油会社의 原油導入先이 各各 다른 產油국이었으며, 또한 各產油국마다 価格差異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가령 油公의 原油投入費를 基準으로 하게 되면 原油価 引上幅이 낮았던 사우디로 부터 原油를 導入하는 湖南精油은 年間 数千億원의 利益이 發生할 것이며, 反對로 湖南精油의 原油価를 基準으로 油価에反映할 경우 其他 精油会社는 数千億원의 缺損을 보게 되어 正常稼動이 不可能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는 79年 7月 10日 油価調整時부터 石油安定基金의 運用을 通해 原油価 平準化 制度를 實施하기始作하였다. 即, 原油価만 平準화해 준다면, 其他 費用測面에서의 各 精油会社別 差異는 原油価 單一化 時의 경우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前提下에 油価를 構成하는 原価要素中 가장比重이 큰 原油価만이라도 制度의으로 平準화해 나가자는 것이었으며, 이에 더하여 거의 每月 引上이 通報되고 있는 原油価 狀況下에서 国内油価도 이에 따라 每月 引上할 수 없었기 때문에 国内油価引上에 있어서 多少間 餘裕를 갖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背景下에 政府는 79年 7月 10日 国内油価를 調整하면서 油価反映 基準原油価를 23.50\$/B로 하였으며, 이보다 낮은 価格으로 原油를 導入할 때에는 그 差額을 石油安定基金으로 徵収도록하고, 反對로 이보다 높은 価格으로 原油를 導入할 경우에는 그 差額을 基金에서 補填도록 하였다. 勿論 이 당시만 하더라도 各 精油会社別 原油導入価格의 平準화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上昇하는 原油価格에 対処하자는 意味가 보다 強한 狀況이었다.

한편 80年에 들어서 變動換率制가 實施되자 이례한 石油安定基金은 換率變動에 対処하는 役割까지

担当하게 되었으며, 原油価 急騰 및 換率變動에 따른 精油会社 損益推定 困難으로 精油会社의 損益調整이 어려워지자 이를 調整하는 機能마저도 遂行함으로써 石油安定基金은 政府가 가지고 있는 萬能의 武器로까지 看做되었던 것이다. 79年 7月의 油価調整時 設立된 이러한 石油安定基金制度는 당초 基準原油価格과의 差額徵収 概念에서 점차로 定額徵収 概念으로 变化되었으며, 基金使用用途에 있어서 그 使用이 점차 制限되어가는 경향에 있으나, 이 基金制度는 原油価多元化 現象에 対処하기 위하여創造된 우리 나라에 独特한 制度의 하나가 된 것이다.

#### 다. 81. 10. 29 第61次 OPEC特別會議結果 原油価單一化로 복귀함에 따른 油価管理方式

81年 중순부터 原油市場은 供給過剩狀態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OPEC(石油輸出國機構)는 81年 10月 29日 第61次 特別會議 結果 78年末의 單一化 狀態로 復歸하고, 81年 12月 9日의 第62次 OPEC會議 결과 一部 重質原油価가 引下됨으로써 78年末보다 더욱 單一化되어 原油価多元化에 따라 国内油価의 90%以上을 차지하는 原油価를 平準化하여 精油社別 損益差異를 완화하고, 產油국의 빈번한 原油価 引上과 逆及引上에 따르는 国内油価調整 要因을 暫定的으로 緩衝하기 위하여 實施된 原油価平準化制度는 전면 再檢討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政府는 82年 3月 11日 油価調整時 原油価平準化 制度를 廢止하여 原油費部門에 競爭原理를導入하게 되어 전체 精油社를 基準한 価格決定과 原油費部門에의 競爭原理導入으로 油価自律化는 한 층 더 加까워지게 된 것이다.

### III. 앞으로의 油価政策方向

#### 1. 現行 油価制度의 評価

現行 油価制度는 政府主導型 開發年代이며, 精油產業의 初期段階인 60~70年代에는 基礎에너지 価格의 一時的 安定과 ベイゾ에 의한 精油產業의 暴利規制에 寄与하여 왔으나 그동안의 諸般 事件變化 즉, 經濟規模의 拡大에 따른 民間主導의 經濟運用基調로의 転換, ベ이ゾ의 退潮, 國際石油市場의 급격한 變化, 變動換率制 및 輸出入自由化 拡大 등 開

放經濟体制로의 移行등에 따라

○ 精油産業의 政府依存度 深化 및 그에 따른 節減可能한 費用의 消費

○ 國際環境变化에의 適応力 弱.

○ 石油의 長期, 安定的 需給에 沮害등의 構造的矛盾看과 副作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精油産業 経営主体의 責任經營意識 고취와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한 経済의 能率과 効率性提高, 産業의 均衡의 發展과 對外 経済力 強化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現行 油價制度인 政府의 直接規制方式에서 間接規制方式으로의 転換이 시급 불가피하다고 評價되고 있다.

## 2. 油價管理制度改善의 基本方向

이러한 問題点을 是正하기 위하여는 油價制度는 原則의으로 市場經濟原理를 導入하여 経済의 能率과 効率性을 提高하도록 하고, 制度改善에 따른 経済社會의 衝擊을 最少化하되 다음과 같은 조치를並行, 補完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① 競争制限要因의 最少化로 自律競爭條件을 造成
- ② 價格構造의 國際化
- ③ 需給安定을 위한 政府의 最終의이고 最少限의統制. 調整機能 留保

## 3. 油價管理制度 改善方案

### 가. 方案의 内容

事業者가 油價를 스스로 決定

○ 独寡占 廃害가 유발되지 않는 範圍内

○ 油價에 對한 政府의 直接規制에서 間接規制로 發展

### 나. 予想問題点

① 價格談合및 生產카르텔을 通한 價格의 不當引上이 憂慮되고,

② 油種間 價格構造의 國際價格構造로의 接近으로 石油化学原料(나프타) 및 民生安定用製品(軽油, 灯油)價格이 引上될 可能성이 높으며,

③ 現物市場 低價製品導入이 增加할 경우, 精油

社의 稼動率 低下로

○ 消費地精製主義의 基調가 봉괴되어 長期安定需給体制의 維持가 곤란해지며,

○ 原油의 長期契約物量減少로 安定 導入 基盤을喪失할 憂慮가 있고,

④ 石油類價格의 수시 변동으로 電力等 公共料金 및 一般物價管理에 애로가 發生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 다. 施行方案

따라서 이 러한 問題点을 緩和하기 위하여

① 段階別, 漸進의로 추진하되, 関聯制度 改編을 並行, 實施하고,

② 價格談合및 不當引上防止와 競争原理의 調和를 위하여

○ 不可抗力의 要因(原油價, 換率, 國際金利)의 变動範囲 離脱時는 政府가 介入하고,

○ 유전스使用期間은 標準期間(例: 120日)을 定하여 實際 使用期間과 関係없이 適用하며, 販売競爭增設等에 따른 資金圧迫에 依해 標準期間보다 長期의 유전스 期間을 利用했을 경우, 연장기간의 費用을 油價에 反映하는 것은 인정치 않음으로써 精油社의 責任經營意識을 고취시키고,

○ 長期的으로 石油製品 輸出入自由化를 價格引上을 防止하는 制度의 장치로 하되, 精油産業 事業基盤의 存續을 위하여

○ 製品導入閑稅 및 基金의 弹力的 運用으로 対処하는 方式이다.

### 라. 施行計劃

政府는 이 러한 油價管理의 間接規制方式으로의 漸進의로 転換을 위하여 우선 83年 2月6日字로 제트油, 溶濟價格을 自律化하였으며, 이를 段階別로 全油種에 波及시켜 나갈 計劃이다.

제트유, 溶濟外에 自律化될 油種順位는 大略 다음과의 順이 될 것이다.

① 大量去來로 實需要者와 直接 協商이 可能한 油種: B-C油 等의 찬사유

② 乘用車의 燃料 및 石油化学工業의 原料: LPG 撃發油, 나프타

③ 残餘油種: 灯油, 軽油, \*